

14. 변상금 청구

㊦ 변상금 청구(예비적 병합)

1.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432,304,870원 및 이에 대한 2007. 10. 1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

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이고, 구 국유재산법(1999.12.31.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1조제2항, 제25조제3항 및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제3항에 의하면,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자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,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.

②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권자(=관리청)

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하면,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인 관리청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,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권자도 그 관리청이다.

③ 김포세관장으로부터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관우회가 김포공항 무환

화물창고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은 지정장치장에 대한 지배이용관계와는 별도로 위 사단법인이 독립한 주체로서 점유·사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(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28568 판결)

❖ 변상금 청구(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)

1. 원고에게, 피고 노○백은 744,965원, 피고 김○옥, 동 전○성은 연대하여 744,965원, 피고 박○락, 동 이○길은 각 640,395원, 피고 임○백, 동 홍○국은 연대하여 305,006원 피고 김○조, 동 김○근은 각 486,3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[참조판례] 해외파견 기술훈련비 상환의무와 근로기준법 24조와의 관계
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파견 훈련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할 의무 있다는 근로자가 그 상환방법으로 약정기간 사용자에게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(대법원 1974.1.29. 선고 72다2565 판결)